

『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2007. 12. 31일부로 매립 종료된 구포쓰레기 매립장에 민간투자사업체인 (주)에코에너지 홀딩스가 시행한 매립가스 발전시설 일체를 성과배분계약에 의거 기부채납 받아 사용종료 매립장의 조기안정 및 온실가스를 감축함은 물론 전력판매로 인한 시세수입을 증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【 취득재산 - 기부채납 】

□ 매립가스 발전시설

- 건 물(설비포함) : 1식
- 기준가격(사 업 비) : 1,399,440천원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5. 검토의견

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

2007. 12. 31일부로 매립 종료된 구포동 493번지 일원의 구포쓰레기 매립장에 민간투자 사업체인 (주)에코에너지 홀딩스가 시행한 매립가스 발전시설 일체를 성과배분계약에 의거 기부채납 받아

동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매립가스 발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시세입 증대 및 사용종료 매립장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할 것임